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청도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5. 7.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 위법 부당관리**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청도군 ☞☞☞☞과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에 의한 서식 4호(규칙 별지 9호)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관리에 관한 카드에 재난관리책임자,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재난대비체제(재난수습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망)등을 기록·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 붕괴 등 긴급재난발생시 재난대비체제(비상연락망)를 활용 전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도군(☞☞☞☞과, ✉✉과 등)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91개소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별로 재난관리책임자 3명, 위치도, 안전점검내용, 조치결과, 유관기관 ·단체(소방, 경찰, 한전, 통신, 가스, 의료기관 등)의 연락처를 기입하여 재난시 청도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하게 사용될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관리대상시설(아파트, 연립주택) 관리 소홀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청도군 ✙✙과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 A, B, C등급으로 구분하여 2년에 1회 안전점검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 지침에서는 아파트(5층~15층 이하) 및 연립주택(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도군(✙✙과)에서는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일제·수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입력하고 시설물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에 따라 중점 관리하여야 함에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청도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20개소 전체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누락하여 2년에 1회식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등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청도군민 2,309명에 대한 재산과 생명에 대한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누락 현황

시설유형	지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관리시설	미지정(누락) 시설			비고
			시설수	세대수	주민수	
계	20	-	20	816	2,309	
아파트	12	-	12	650	1,827	
연립주택	8	-	8	166	482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등 관련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미이행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청도군 ✙✙과

내 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6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 ·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시특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은 별표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청도군(✙✙과)에서는 2012~2015년 감사일 현재까지 시특법 2종 시설물인 ❑❑❑❑❑ 등 3개소에 대하여 2014.12에 하여야 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붙임 현황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한 11시설 모두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책임기술자 자격이 없는 각 부서 기술직공무원들이 55회 점검한 결과 중 24회는 점검보고서나 출장복명서 작성 없이 점검 유무만 관리시스템(fms 시스템)에 기록하

였다.

그 결과 청도군(✙✙과 등)에서는 시특법 제6조에서 정하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 시설물 3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시특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미달인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적정하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특법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등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②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설계변경 소홀 등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청도군 □□□□과

내 용

청도군(□□□□과)에서는 ✚✚✚ ✣✣✣✣✣✣(✣✣✣✣) ✦✦사업을 ☑☑☑☑☑☑ ＸＸＸ와 도급액 00,000,000천원에 2013.04.24. 계약 체결하여 2013.04.30. 착수하여 2016.12.09.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인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요령(환경부)에 의하면 기술제안 공모를 할 경우 공고 후 공법 접수, 심의의원 위촉, 공법선정 평가, 실시설계 등으로 추진하고 평가시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평가 항목(보증수질,

운영비, 경제성 등)은 관리청에서 수행평가하고 상대항목은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외부 자문위원 50%)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설계조건은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낙찰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기능성 등에 대한 통합 비교·평가 편에 의하면 공법 선정시 제시한 공사비와 실시설계시 적용한 공사비 자료가 상이하여 공법 선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당초 공법 선정시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되, 공법 선정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도군(□□□□과)에서는 당초 계약목적(건축물, 조경, 부대토목)과 관련이 없어 지방계약법에 따라 별도 발주절차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오수처리장(330㎥/일) 공사비 0,000,000천원(낙찰율 미적용)을 위 공사에 포함시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발주절차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 계약(2014.10.14)하여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이 있으며,

환경부 공공하수도 설치지침 및 평가요령을 준용하여 오수처리장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청도군 공고) 평가위원을 대학교수,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청도군설계자문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의 감리회사 ㈜☎☎☎에 평가를 맡겨 자사의 전무, 상무, 이사 3명이 공법 선정을 하였고 평가항목도 ㈜☎☎☎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평가한 결과 ㈜𝄞𝄞𝄞𝄞𝄞𝄞𝄞의 0000공법이 선정되었고 평가시 제출한 공사비 0,000,000천원(낙찰율, 제경비 포함) 보다 00,000천원(낙찰율, 제경비 포함) 증액된 공사비 0,000,000천원(낙찰율, 제경비 포함)으로 실정보고를 승인 후 000,000천원(낙찰율, 제경비 포함) 증액된 공사비 0,000,000천원(낙찰율, 제경비 포함)으로 설계변경 계약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청도군(□□□□과)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발주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 0,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부당하게 증액 계약하여 도급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고, 오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법 선정을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요령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준용하지

않아 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기술제안공사비의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청도군 예산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낭비 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오수처리장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ＸＸＸＸＸＸＸＸ 책임감리 용역 적용 소홀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청도군 ☂☂과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하며,

구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공사관리방식이란 건설현장의 공사관리방식을 말하며, 직접감독, 책임감리[1],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2], 검측감리[3]로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5조(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조)에 의한 의무책임감리 대상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도군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모든 접수된 서류는 민원과에 접수하고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일일결산 관리하며

---

1)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2)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방문구술민원, 전화 민원은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을 대장에 접수한 후 민원과에 접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도군 ☂☂과에서는 ＸＸＸＸＸＸＸＸ건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의무 책임감리 건설공사(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이고 22개공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의무 책임감리 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에 해당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관리방식을 검토하여 공사특성평가 62점으로 최선책은 시공감리, 차선책은 검측감리 또는 책임감리이나 공사감독 가용인력이 10.56인・월에 반해 소요인력은 16.29인・월로 가용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공사관리방식을 책임감리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4.01.09. 청도군수의 결재를 득하였다.

<공사특성 평가 결과>

공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개월)	공종난이도		공사난이도		사업여건					공사특성평가점수	난이도그룹
			난이도	점수	난이도	점수	공사비규모	공사기간	**민원발생가능성**	유사공사경험	계		
단지	98	36	보통	20	기타	10	2	10	**10**	10	32	62	B

※ ＸＸＸＸＸＸＸＸ 감리등 공사관리방식 검토보고(☂☂과-000호, 2014.1.9.) 발췌

1. 공사특성 평가 결과 부적정

ＸＸＸＸＸＸＸＸ 감리등 공사관리방식 검토보고(☂☂과-000호, 2014.1.9.)에 의하면 민원발생 가능성을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여 최고점인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기사업은 ○○○ 부지를 이용한 ○○○○사업으로 전체 편입용지 55필지 99,800㎡중 국공유지가 99.6%로서 일반건설공사에 비해 높다고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며, 감사일 현재 접수된 민원대장을 요구하였으나 민원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발생가능성이 통상적수준의 평가기준인 5점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10점을 적용 하였으며,

<사업여건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10	5	2
민원발생 가능성 (10)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2. 공사관리 방식 배분에 따른 소요 인력 산정 부적정

또한, 소요인력 산출 근거를 보면 청도군 ☂☂과에서 2014년도 발주공사는 ＸＸＸＸＸＸＸ와 ☕☕☕☕☕☕☕☕☕☕☕☕ 2건으로 2014.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소요인력을 산정하여 가용인력이 소요인력보다 부족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은 2014. 1월 보고서 작성 당시 행정절차 협의 지연에 따라 용역 일시정지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4. 1월에는 착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실 착공일은 2015.03.02. 착공한 점을 보면 2014년 발주 사업은 ＸＸＸＸＸＸＸ 1건으로 ☂☂과 공사감독 가용인력을 2명으로 산정한 점을 들면 공사감독을 위한 소요인력이 부족하다는 검토결과는 부적정하다.

3.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조치결과 미반영

청도군 ☂☂과에서는 ＸＸＸＸＸＸＸＸＸ을 추진하면서 군 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2013.05.29.(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 운영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난간 및 휀스를 전 구간에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등 6가지 조건을 반영한다는 조건부 심의를 득한 사실이 있으며, 조건부 심의에 대한 반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운영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난간 및 휀스를 전 구간내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 ○○ 복원 약2.5km 구간 중 No.1+7～No.1+15(우) L=10m, No.1+10～No.11+5(우) L=194m 일부구간에만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안전대책 수립 미흡, 주차수요 재조사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위치로 재배치 검토조치 미이행, 레일바이크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돌아갈수 있는 조치방안 마련 의견 미이행 등 심의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4. 감사자료 누락

또한, 청도군 ☂☂과에서는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대상사업으로 ㅁㅁㅁㅁㅁㅁ(주) 외1개사와 2015.02.26. 계약하고 2015.03.02. 착공한 ☕☕☕☕☕☕☕☕☕☕☕에 대하여 감사대상임에도 자료를 누락하였다.

그 결과 청도군 ☂☂과에서는 ＸＸＸＸＸＸＸＸ을 추진하면서 감리등 공사관리방식 검토보고 시 시공감리로 적용 하여야 함에도 공사특성평가를 62점으로 평가하고 소요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차선책인 책임감리로 사업관리방식을 부적정 적용함으로써 감리용역 예산 000,000천원을 더 투입하였으며, 또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조치결과 미반영 및 ☕☕☕☕☕☕☕☕☕☕☕에 대한 감사대상자료를 누락제출 하는 등 관련사업추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설계변경 소홀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청도군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 ★★★★★★★★(0000) 관련

청도군 ☂☂☂과에서는 2013.11.12. ☕☕건설(주) ☺☺☺와 계약하고 2013.11.18.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설사무실 180㎡, 가설창고 60㎡, 숙소 80㎡, 시험실 30㎡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2동만 설치하고 있고, 가설울타리 설치(18개월→16개월), 화강석경계석 거푸집 미시공 등 감사일 현재 공사비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2. ☘☘☘ ★★★★조성사업(十十十十) 관련

청도군 ☂☂☂과에서는 2013.11.14. 𝄞𝄞𝄞𝄞건설(주) ✢✢✢과 계약하고 2013.11.15.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 하천골재를 성토재료로 사용하여 운반거리(L=5.0km→0.866km)가 당초보다 줄었고, 가설사무실 180㎡, 가설창고 60㎡, 숙소 80㎡, 시험실 30㎡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2동 설치, 축중계 미설치, 벌개제근 미시행 등 감사일 현재 공사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청도군 ☂☂☂과에서는 ★★★★ ★★★★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합계 000,000천원 만큼 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